

국회에서 의결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2018년 3월 20일

국 무 총 리 이 낙 연

국 무 위 원 박 상 기
법무부장관

●법률 제15491호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過怠料는”을 “과태료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이를 賦課·徵收한다”를 “부과·징수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8항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등기권리자가 상당한 이유 없이 법정 등기신청을 해태한 경우에는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 기회, 이의제기, 과태료에 대한 재판 등의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과태료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같은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같은 법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법의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 등을 삭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